

■ 청약신청 및 자격확인 구비서류

가-1)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구비서류

구분	필수	추가 (해당자)	제출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	
공동 서류	○		무주택 서약서	본인	· 무주택요건 파악 및 서약(접수장소 비치)	
	○	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/인감도장	본인	·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)	
	○		신분증	본인	· 본인 확인용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	
	○		주민등록(표)등본(상세)	본인	· 본인,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,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	
	○		주민등록(표)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주민등록(표)등본(상세)	배우자	· 혼인 상태인 경우에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	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(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)	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	·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작성(접수장소 비치)	
	○		입양관계증명서		· 입양의 경우,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	
	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
		○		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·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(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 불가)
		○		이혼사실확인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예비 신혼부부 중 과거 이혼 후 결혼을 준비 중인 경우(접수장소 비치)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세대원	· 무직자인 경우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(접수장소 비치)	
혼인 상태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혼인여부 및 혼인신고일 확인용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"상세" 발급	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	
	○		소득증빙서류	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	
혼인 예정	○		주민등록(표)등본(상세)	배우자	·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"상세"로 발급	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및 배우자	· 예비신혼부부 여부 확인 . 본인 및 배우자 기준 "상세" 발급	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혼인 후 구성될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	
	○		소득증빙서류	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혼인 후 구성될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○		위임장	-	· 접수장소 비치	
	○	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/인감도장	-	·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)	
	○		대리인 신분증	-	· 대리인 본인 확인, 서명 가능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	
해당자		○	무주택 소명서류	-	·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 건물 확인서 -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

가-2) 청년 특별공급 및 세어형 특별공급 청약 시 구비서류

구분	필수	추가 (해당자)	제출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무주택 서약서	본인	· 무주택요건 파악 및 서약(접수장소 비치)
	○	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/인감도장	본인	·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)
	○		신분증	본인	· 본인 확인용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	○		주민등록(표)등본(상세)	본인	· 본인,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,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(표)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혼인여부 확인용. "상세"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세대원 전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
	○		소득증빙서류	세대원 전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	·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(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	·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작성(접수장소 비치)
	○		입양관계증명서	본인	· 입양의 경우,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
	○		이혼사실확인서	본인	· 이혼하여 혼인 중이 아닌 경우(접수장소 비치)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세대원	· 무직자인 경우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(접수장소 비치)
	본인 소득 없는 경우 (추가)	○		무소득사실증명원	본인
○	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부모	· 본인의 소득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, 부모 서류 제출
○			소득증빙서류	부모	· 본인의 소득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, 부모 서류 제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○		위임장	-	· 접수장소 비치
	○	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/인감도장	-	·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)
	○		대리인 신분증	-	· 대리인 본인 확인, 서명 가능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해당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-	·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 건물 확인서 -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

가-3) 일반공급 청약 시 구비서류

구분	필수	추가 (해당자)	제출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무주택 서약서	본인	· 무주택요건 확인 및 서약(접수장소 비치)
	○	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/인감도장	본인	·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)
	○		신분증	본인	· 본인 확인용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	○		주민등록(표)등본(상세)	본인	· 본인,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,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(표)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배우자	·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제출 (배우자 본인,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,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)
		○	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·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(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 불가)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○		위임장	-	· 접수장소 비치
	○	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/인감도장	-	·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)
	○		대리인 신분증	-	· 대리인 본인 확인, 서명 가능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해당자		○	무주택 소명서류	-	·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 건물 확인서 -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

- 상기 구비서류는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[2021.08.27(금)]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- 상기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"*"로 표시되어 발급된 서류는 무효이며, 추가 서류 보완하여야 합니다.
- 청약 신청 완료시 접수증을 발급해 드리며, 당첨자는 계약일에 지참하시어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
나)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직장가입자	일반 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해당직장
	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	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추정 (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(직인날인)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 : 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보육교사, 학원강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지역가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(원본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(원본)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*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*임차인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법인 등기부 등본(원본)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(원본)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/세무서 ② 해당직장
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	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/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/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
	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※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 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① 건본주택 비치

- ※ **군복무중이어서 건강(의료)보험증이 없는 경우 :**
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(직업군인 제외)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.
- ※ **종교기관(교회, 사찰 등)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:**
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.
- ※ **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**
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,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.
- ※ **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자 중 자녀를 임차인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:**
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.
- ※ **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**
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.
- ※ **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:**
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.
- ※ **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**
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 제출.
 -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,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 - 상기 제출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 - 상기 구비서류 외 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